

2020년 제10 건축소위원회(건축구조) 심의 주요결과

[1호 안건: 연수구 송도동 396-7번지 (공동주택)]

운영기관	인천광역시경제자유구역청		심의일자	2020.11.19.~11.20.	
건축종별	[○] 신축, [] 증축, [] 대수선, [] 기타				
건축주	성명(법인명) 지에스건설(주)				
대지현황	대지위치 인천광역시 연수구 송도동				
	지 번	396-7	관련지번		
	대지면적	102,446.6㎡	용도지역(지구,구역) 제3종일반주거지역, 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		
건축물현황	건축면적	14,590.2㎡	건폐율	14.24 %	층수 지하 : 1층 / 지상 : 42층
	주 용 도	공동주택(아파트)	구 조	PC구조	건축물 동수 9동
	최고높이	119.95 m	용적률	192.98 %	연면적 합계 288,359.4 ㎡
심의내용	구 분	주요 심의결과			
	(구조)분야	○ 사전검토의견을 반영하여 사업 추진하여야 함 ○ 내진상세 적용되는 보, 기둥 부재를 구분하여 도면에 표기 ○ 원설계자의 구조감리 계약서를 첨부하여 안전한 공사관리가 이루어지도록 할 것			
	(토질)분야	○ 사전검토의견을 반영하여 사업 추진하여야 함			
심의결과	[] 원안 의결 [○] 조건부 의결 [] 재검토 의결 [] 부결 ※ 작성기준(건축위원회 심의기준 9.3 관련) • 원안 의결 : 상정안건에 대하여 수정없이 원안대로 의결 • 조건부 의결 : 상정안건에 별도의 내용을 부가하거나 제외하는 등의 일부 조건을 부여하여 건축사가 반영하도록 하는 의결 • 재검토 의결 : 상정안건을 다시 검토 보완하여 추후 위원회에서 다시 심의토록 의결 • 부결 : 상정안건이 건축법령 등에 위반되거나 심의요건이 불충분하여 부결시키기로 의결 (단, 「건축위원회 심의기준」 2.3 가목에서 라목까지 사유에 해당하여야 함)				

본 건축위원회 심의는 건축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건축물의 구조안전에 관한 전문가의 구조안전심의로서, 사전검토의견 및 심의내용에 대한 이행여부는 인·허가권자가 확인하여 처리하여야 함

2020년 제10회 건축소위원회(건축구조) 심의 주요결과

[2호 안건: 연수구 송도동 588-2지 (참고시설)]

운영기관	인천광역시경제자유구역청		심의일자	2020.11.19.~11.20.	
건축종별	[○] 신축, [] 증축, [] 대수선, [] 기타				
건축주	성명(법인명) (주)디앤더블유로지스틱스				
대지현황	대지위치 인천광역시 연수구 송도동				
	지 번	588-2	관련지번		
	대지면적	25,090 m²	용도지역(지구,구역) 준공업지역, 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		
건축물현황	건축면적	8,832.8 m²	건폐율	35.2 %	층수 지하 : - / 지상 : 3층
	주 용 도	참고시설	구 조	RC조, PEB구조	건축물 동수 1 동
	최고높이	14.9 m	용적률	38.54%	연면적 합계 9,670.67 m²
심의내용	구 분	주요 심의결과			
	(구조)분야	○ 사전검토의견을 반영하여 사업 추진하여야 함 ○ 특수구조건축물이므로 시공시 설계내용을 충분히 반영하시고, 시공 중 변경사항에 대해 책임기술자가 안전율을 충분히 고려하여 검토하기 바람 ○ 국내 기준에 미비한 부분은 해외기준식을 적용하여 설계하였으니 구조설계를 수행한 책임기술자가 구조감리를 수행하여 공사 중 안전성이 확보되도록 조치 바람 ○ S.O.G 슬래브의 허용처짐량이 100mm인 근거 제시 후 사업추진 (허용처짐량 25mm이하)			
	(토질)분야	○ 사전검토의견을 반영하여 사업 추진하여야 함			

심의결과	[] 원안 의결 [○] 조건부 의결 [] 재검토 의결 [] 부결			
	※ 작성기준(건축위원회 심의기준 9.3 관련) • 원안 의결 : 상정안건에 대하여 수정없이 원안대로 의결 • 조건부 의결 : 상정안건에 별도의 내용을 부가하거나 제외하는 등의 일부 조건을 부여하여 건축사가 반영하도록 하는 의결 • 재검토 의결 : 상정안건을 다시 검토 보완하여 추후 위원회에서 다시 심의토록 의결 • 부결 : 상정안건이 건축법령 등에 위반되거나 심의요건이 불충분하여 부결시키기로 의결 (단, 「건축위원회 심의기준」 2.3 가목에서 라목까지 사유에 해당하여야 함)			

본 건축위원회 심의는 건축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건축물의 구조안전에 관한 전문가의 구조안전심의로서, 사전검토의견 및 심의내용에 대한 이행여부는 인·허가권자가 확인하여 처리하여야 함

2020년 제10회 건축소위원회(건축구조) 심의 주요결과

[3호 안건: 중구 중산동 1871-1 번지 (공동주택)]

운영기관	인천광역시경제자유구역청		심의일자	2020.11.19.~11.20.	
건축종별	[○] 신축, [] 증축, [] 대수선, [] 기타				
건축주	성명(법인명) (주)영종하늘도시2차 주택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				
대지현황	대지위치 인천광역시 중구 중산동				
	지 번	1871-1	관련지번		
	대지면적	89,548 m²	용도지역(지구,구역) 제3종일반주거지역, 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		
건축물현황	건축면적	15,408.4m²	건폐율	17.21 %	층수 지하 : 2층 / 지상 : 29층
	주 용 도	공동주택	구 조	RC조	건축물 동수 17동
	최고높이	82.75 m	용적률	194.74%	연면적 합계 235,421.4m²
심의내용	구 분	주요 심의결과			
	(구조)분야	○ 사전검토의견을 반영하여 사업 추진하여야 함 ○ 건축물 내진설계기준 14.5.2 에 의거 지표면으로부터 지하구조의 최하층바닥의 상면까지의 깊이가 5.0m를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건축물 내진설계기준에 의한 지하구조물의 내진설계를 수행할 것 ○ 슬래브 철근이 최소철근비를 만족한다고 해도 간격이 넓어 사용성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음. 철근강도를 낮추고 간격을 높이는 방안도 검토하기 바람 ○ 최근 기상이변으로 태풍의 영향이 점점 문제가 되고 있는 바, 풍하중에 대한 값은 가능하면 여유있게 적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므로 이에 대한 조치 후 사업추진 바람			
	(토질)분야	○ 사전검토의견을 반영하여 사업 추진하여야 함 ○ 매설물의 현황 조사 및 굴착으로 인한 매설물의 영향 분석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되나, 심의 도서에서 확인이 불가하므로 이를 보완하여 사업추진 할 것 .			
심의결과	[] 원안 의결 [O] 조건부 의결 [] 재검토 의결 [] 부결				
	※ 작성기준(건축위원회 심의기준 9.3 관련) • 원안 의결 : 상정안건에 대하여 수정없이 원안대로 의결 • 조건부 의결 : 상정안건에 별도의 내용을 부가하거나 제외하는 등의 일부 조건을 부여하여 건축사가 반영하도록 하는 의결 • 재검토 의결 : 상정안건을 다시 검토 보완하여 추후 위원회에서 다시 심의토록 의결 • 부결 : 상정안건이 건축법령 등에 위반되거나 심의요건이 불충분하여 부결시키기로 의결 (단, 「건축위원회 심의기준」 2.3 가목에서 라목까지 사유에 해당하여야 함)				

본 건축위원회 심의는 건축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건축물의 구조안전에 관한 전문가의 구조안전심의로서, 사전검토의견 및 심의내용에 대한 이행여부는 인·허가권자가 확인하여 처리하여야 함

2020년 제10회 건축소위원회(건축구조) 심의 주요결과

[4호 안건: 연수구 송도동 589-6 번지 (창고시설)]

운영기관	인천광역시경제자유구역청		심의일자	2020.11.19.~11.20.	
건축종별	[○] 신축, [] 증축, [] 대수선, [] 기타				
건축주	성명(법인명) (주)데쌍로지스코리아				
대지현황	대지위치 인천광역시 연수구 송도동				
	지 번	589-6	관련지번		
	대지면적	36,997.0㎡	용도지역(지구,구역) 준공업지역, 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		
건축물현황	건축면적	24,909.03 ㎡	건폐율	67.33 %	층수 지하 : 1층 / 지상 : 8층
	주 용 도	창고시설	구 조	철골조, PEB구조	건축물 동수 1 동
	최고높이	39.9 m	용적률	207.22 %	연면적 합계 77,329.53 ㎡
심의내용	구 분	주요 심의결과			
	(구조)분야	○ 사전검토의견을 반영하여 사업 추진하여야 함 ○ 특수구조건축물이므로 시공시 설계내용을 충분히 반영하고, 시공 중 변경사항에 대해 책임기술자가 안전율을 충분히 고려하여 검토하기 바람 ○ 국내 기준이 미비한 부분은 해외기준식을 적용하여 설계하였으니 구조설계를 수행한 책임기술자가 구조감리를 수행하여 공사 중 안전성이 확보되도록 지도하기 바람			
	(토질)분야	○ 사전검토의견을 반영하여 사업 추진하여야 함			
심의결과	[] 원안 의결 [○] 조건부 의결 [] 재검토 의결 [] 부결				
	※ 작성기준(건축위원회 심의기준 9.3 관련) • 원안 의결 : 상정안건에 대하여 수정없이 원안대로 의결 • 조건부 의결 : 상정안건에 별도의 내용을 부가하거나 제외하는 등의 일부 조건을 부여하여 건축사가 반영하도록 하는 의결 • 재검토 의결 : 상정안건을 다시 검토 보완하여 추후 위원회에서 다시 심의토록 의결 • 부결 : 상정안건이 건축법령 등에 위반되거나 심의요건이 불충분하여 부결시키기로 의결 (단, 「건축위원회 심의기준」 2.3 가목에서 라목까지 사유에 해당하여야 함)				

본 건축위원회 심의는 건축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건축물의 구조안전에 관한 전문가의 구조안전심의로서, 사전검토의견 및 심의내용에 대한 이행여부는 인·허가권자가 확인하여 처리하여야 함